

---

# 수갑 등 사용 지침

---



사 국

# 수갑 등 사용 지침

## ■ 수갑 등 사용요건 및 법적근거

### ○ 수갑 등 사용요건

- ① 범인을 검거할 때(현행범,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체포·구속영장 집행 등)
- ② 송치, 출정,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 ③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 ④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⑥ 위력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⑦ 경찰관서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 관련규정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1031호)

#####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65호)

#####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842호)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판례 (96도561, 1996. 5. 14)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수갑 등 사용 기본원칙

- 피의자 검거시부터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 포함) 인치시까지의 뒷수갑 사용 원칙
  -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 가능
-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 원칙
  -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뒷수갑 사용 가능

## ■ 상황별 수갑 등 사용지침

### <수갑 등 사용 단계>

① 피의자 검거시 → ② 피의자 호송시 → ③ 사무실 조사 대기중 → ④ 조사시  
→ ⑤ 화장실 이용시 → ⑥ 유치장 입감후 접견.면회시 → ⑦ 유치인 호송시

### 1 피의자 검거시

-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 가능
- 시갑시 양쪽 손목 수근골 부위에 사용



- 뒷수갑 상태로 이동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동행하는 등 피의자 도주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피의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의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의 이중 잠금 장치 사용
  - 단 피의자의 항거 등으로 이중 잠금장치 사용이 곤란할 경우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 피의자 호송시

- 피의자 검거시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
- 차량호송의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

## 3 사무실 조사 대기중

-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 다만 아래 대상자에게는 **뒷수갑을 사용하거나 의자 등 고정체에 한쪽수갑 연결 가능**
  - ① 범죄 혐의가 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또는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③ 위력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④ 경찰관서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관련 규정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65호)

####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3.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88호)

#### 제172조 (수갑의 사용방법)

-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수갑의 방법으로 할 것**
  - 2.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앞수갑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뒷수갑의 방법으로 할 것**

#### 4 조사시

- 원칙적으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 제한
  - 다만 ① 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또는 마약류 사범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저한 자는 앞수갑 또는 의자 등 고정체에 한쪽수갑 연결 가능
- 관련 규정 및 판례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판례 (2001헌마728결정, 2005. 5. 26)

▶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피의자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공권력 행사이다.

#### 5 화장실 이용시

- 남성피의자의 화장실 이용시에는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해제
  - 소변시에는 경찰관이 근접거리(1m 이내)에서 감시하되,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제한 한쪽 수갑 또는 피의자의 혁대를 붙잡고 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대변시에는 사전에 도주 가능한 창문 등이 있는지 화장실 구조를 확인 후 피의자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화장실 내, 용변실 밖)에서 감시
  - 화장실 출입전 흉기 등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주·자살·자해 등 사고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여성피의자의 경우에도 화장실 이용시에는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해제, 여성경찰관이 피의자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화장실 내, 용변실 밖)에서 감시
  - 다만 여성경찰관이 없을 경우 사전에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을 교양 받은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일반직, 무기계약직 등)도 가능
  - 여성경찰관 또는 여성직원이 없어 남성경찰관이 동행할 경우에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자살·자해 등 사고예방을 위해 화장실 구조 및 흥기 등의 소지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도주방지에 각별히 유의
- 관련 규정 및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62조(호송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권위 권고 (10진정0336900, 2010. 9. 13)**  
 ▶ 진정인이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 동안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조치(대변이 옷에 묻음)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에 어긋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유치장 입감 후 접견·면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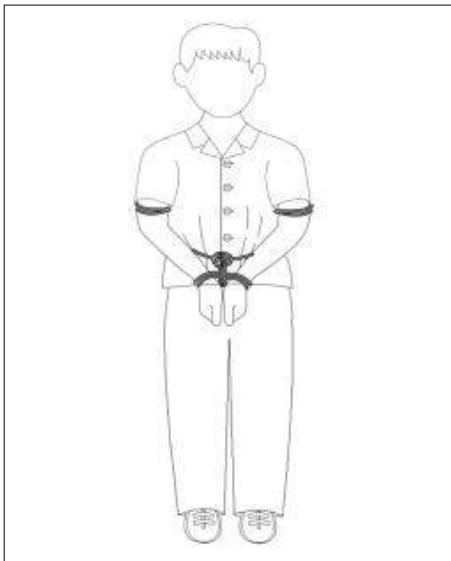
- 원칙적으로 유치장 입감 후 접견·면회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 제한
  -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앞수갑 사용 가능
-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인권위 권고 (02진인10334결정, 2003. 3. 3)**  
 ▶ 유치장담당직원이 관행적으로 면회시의 유치인들에게 수갑을 채움으로써 도주·자해방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수갑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였으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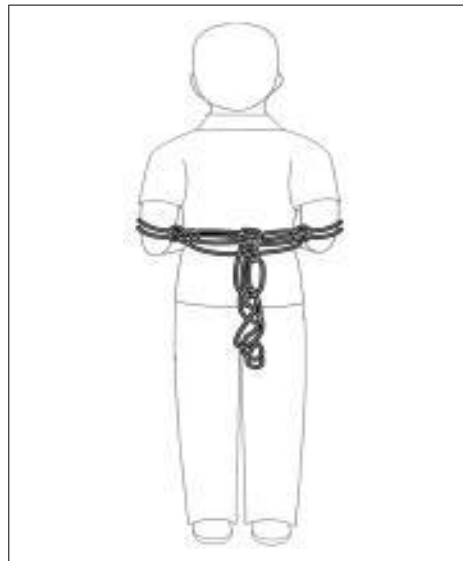
## 7 유치인 호송시

- 송치·출정·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
  - 이때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사전 허가(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후 승인)를 받아 수갑과 포승을 사용
  - 다만 원칙적으로 유치장내에서 조사할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 제한
- 유치인 호송 사유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수갑** 및 **상체승**의 방법으로만 사용

### < 상체승 방법 >



(앞면)



(뒷면)

- 유치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건 등으로 수갑을 가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
- 관련 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65호)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88호)

제172조 (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수갑**의 방법으로 할 것



제179조 (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 하는 경우에는 간이승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체승의 방법으로 한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 ■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 사항

-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
-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 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 사용 제한
-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자·상대방·종류·수량·사용경위·피해상황·사후조치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
- 수갑 사용 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